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3 선고 2019가단2263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55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7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의 표기만 달리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나누어 청구하였으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7827호 양수금사건)하여 2018. 8. 22. ‘B은 원고에게 74,521,979원 및 그 중 21,356,735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B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1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이 2009. 6. 28.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자녀들로 B, D, E이 있었다.

다. B과 피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8. 11. 13.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각 2009.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2018. 11. 13.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서류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분할협의서의 작성 날짜가 '2018. 11. 13.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18. 11. 12.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인 점, ② 1982. 4. 13.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438호는 '재산상속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C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9.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B의 법률행위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09. 6. 28.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2018. 11. 13.경'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B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2/9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55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2/9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7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별지 제1목록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F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G

H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3㎡

2층 145.68㎡

3층 145.68㎡

4층 136.08㎡

지하 49.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I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73.6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F 대 42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422000분의 30047.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J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K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04.54㎡

2층 131.04㎡

3층 131.04㎡

4층 122.7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L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2.1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김해시 J 대 238.6㎡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23860분의 1764.

끝.

